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 감액 근거 마련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98호)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88호)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10호)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47호)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79호)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74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15호)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41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개 요	1
【윤준병의원안】	1
【장철민의원안】	3
【윤호중의원안】	5
【박용갑의원안】	8
【김태년의원안】	10
【김재원의원안】	11
【서영교의원안】	12
【민형배의원안】	14
II . 검토의견	16
1. 탄핵소추 의결 등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감 액 근거 마련	16
2.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신분상 처우 및 보고 금지 등에 관한 규정 마련	30

I. 개 요

【윤준병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9.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한행사 정지 기간에도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하여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정지가 된 공무원이 계속해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反)하는 행위임. 특히,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탄핵심판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된 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 「국가공무

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가운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와 유사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파면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5 신설).

【장철민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장철민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11.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65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됨.

탄핵소추된 자는 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신분이 유지되고, 현행법상 탄핵 시 보수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됨.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하여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남.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직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하도록 하고 있음(제80조제3항 등).

현행 법률 제도를 확장할 때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도 그 직무 정지 기간 중에는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함.

이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신설).

【윤호중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호중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11.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인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피소추인을 해임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공모, 방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출석 및 직무정지 등을 피하기 위해 탄핵안 의결 전에 사퇴하고 대통

령은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꼼수 면직’이 반복되고 있음. 과거 김홍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탄핵을 회피하여 논란이 되었음.

이는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의결 전까지의 소추대상자 퇴직 등에 관한 입법적 흠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한편, 탄핵소추된 사람의 권한행사 정지 기간 중 보수 지급과 직무관련자 접촉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미비한 실정임. 특히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에도 보수 전액이 지급되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세금이 불합리하게 지출되고 있으며, 직무 관련자들과의 접촉이 제한되지 않아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여 공직기강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퇴직을 희망하는 정무직공무원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소추가 발의되어 그 소추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인 탄핵소추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안 제78조의5 신설),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는 그 정지기간 중 50%를 감액하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고,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 파면이 결정된 경우에는 권한행사 정지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

며(안 제47조의2 신설), 탄핵소추되어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신설).

【박용갑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용갑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12.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권한 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여타 집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 개정안 발의· 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인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고,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탄핵시 보수 지급정지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

한편,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며, 이를 활용해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정지한다는 탄핵소추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그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그 밖의 정보 활용을 제한하고자 함 (안 제49조의2 및 제60조 단서 신설).

【김태년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태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13.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의 경우,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어 직무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의 미비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 정도에 맞는 보수 지급을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김재원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18.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경우, 직무 수행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보수가 그대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탄핵소추 의결 등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직무 수행 실태와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서영교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27.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도 보수 지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본인의 잘못으로 탄핵소추 의결에 이르러 일을 하지 않게 되어도 탄핵 절차가 종료될때까지 다달이 보수를 지급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통령의 내란의 죄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약 2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탄핵된 대통령에게 월세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해당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고 (안 제47조의2 신설), 법 시행 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민형배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27.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되면, 헌법상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직무가 정지됨으로 대통령 보수도 의결 즉시, 정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65조는 “공무원 직무집행시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여타 집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상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 국정 운영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직무는 정지됐는데, 탄핵 의결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정지 규정이 부재하여 보수가 지급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직 처분시 그 기간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합니다.

이에, 대통령도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그 기간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된 모든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1. 탄핵소추 의결 등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감액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들은 탄핵소추 의결 등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73조의5 신설, 장철민의원안·박용갑의원안·민형배의원안 제49조의2 신설, 윤호중의원안·김태년의원안·김재원의원안·서영교의원안 제47조의2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윤호중의원안	박용갑의원안	김태년의원안	김재원의원안	서영교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신 설>	제 73 조 의 5 (탄핵 소 추 의결 을 받은 공무원의 대우) ① (생략) 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하여 지급한다.	제 49 조 의 2 (권한 행사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탄핵 소 추 의 결 을 받은 자는 권한 행사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한다.	제 47 조 의 2 (탄핵 소 추 된 공무원의 보수) ①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는 그 정지 기간 중 50%를 감액한다. ② 제1항의 감액된 보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제 49 조 의 2 (탄핵 된 공무원의 보수) 탄핵 소 추 의 결 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제 47 조 의 2 (권한 행사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탄핵 소 추 의 결 을 받는 등 본인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한다.	제 47 조 의 2 (권한 행사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탄핵 소 추 의 결 을 받아 권한 행사 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한다.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이 취소된 경우에는 미지급분	제 47 조 의 2 (탄핵 소 추 된 공무원의 보수)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 소 추 의 결 을 받아 권한 행사 가 정지된 공무원은 해당 기간 보수 전액을 감한다.	제 49 조 의 2 (권한 행사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①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감액된 보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각각 결정

현 행	윤준병 의원안	장철민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	박용갑 의원안	김태년 의원안	김재원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에서 기 각 결정 이 있는 경우 소 급 하 여 지급한다. ③ 탄핵 심판청구 가 인용 되어 파 면이 결 정된 경 우 에 는 권한행사 가 정지 된 기간 동안 지 급 받은 보수 전 액을 반 환하여야 한다.			을 일괄 지 급 할 수 있다.		이 있는 경우 소 급 하 여 지 급 한 다. ② 제1항 에 따른 권한 행 사가 정 지된 자 가 대통 령일 경 우 대통 령비서실 에 소속 된 모든 자 에 게 제 1 항 을 적용한다.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 일) 이 법은 공 포한 날 부터 시 행한다.	제1조(시행 일) 이 법은 공 포한 날 부터 시 행한다.	이 법은 공 포한 날부 터 시행한 다.	제1조(시행 일) 이 법은 공 포한 날 부터 시 행한다.	제1조(시행 일) 이 법은 공 포한 날 부터 시 행한다.	제1조(시행 일) 이 법은 공 포한 날 부터 시 행한다.	제1조(시행 일) 이 법은 공 포한 날 부터 시 행한다.	제1조(시행 일) 이 법은 공 포한 날 부터 시 행한다.
	제2조(적용 례) 제7 3조의5 의 개정 규 정 은 이 법 시행 당 시 탄핵 절 차 가 진행 중 인 경우 에 대하 여도 적 용한다.	제2조(적용 례) 제49 조 의 2 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당 시 탄핵 절 차 가 진행 중 인 경우 에 대하 여도 적 용한다.		제2조(적용 례) 제49 조 의 2 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당 시 탄핵 절 차 가 진행 중 인 경우 에 대하 여도 적 용한다.	제2조(보수 감 액 에 관한 적 용례) 제 47조의2 의 개정 규 정 은 이 법 시 행 당시 탄핵 절 차가 진 행 중인 경 우 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보수 의 전액 감 액 에 관한 적 용례) 제 47조의2 의 개정 규 정 은 이 법 시 행 당시 탄핵 절 차가 진 행 중인 경 우 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보수 감 액 에 관한 적 용례) 제 47조의2 의 개정 규 정 은 이 법 시 행 시 탄 핵 절차 가 진행 중인 경 우에 대 하 여 도 적용한다.	제2조(보수 감 액 에 관한 적 용례) 제 49조의2 의 개정 규 정 은 이 법 시 행 당시 탄핵 절 차가 진 행 중인 경 우 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각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 등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되면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동안 해당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각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탄핵소추 시 보수감액	적용례
윤준병 의원안	■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 ※ 탄핵소추 의결을 받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	■ 법 시행 당시 탄핵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
장철민 의원안	■ 보수전액 감액	■ 법 시행 당시 탄핵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
윤호중 의원안	■ 보수의 50% 감액 - 탄핵기각 시 감액분 소급 지급 - 탄핵인용 시 기지급분 환수	-
박용갑 의원안	■ 보수전액 감액	■ 법 시행 당시 탄핵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
김태년 의원안	■ 보수전액 감액(탄핵소추 등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권한행사 정지 시)	■ 법 시행 당시 탄핵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
김재원 의원안	■ 보수전액 감액 - 탄핵기각 시 감액분 소급 지급	■ 법 시행 당시 탄핵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
서영교 의원안	■ 보수전액 감액(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된 자)	■ 법 시행 당시 탄핵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
민형배 의원안	■ 보수전액 감액 - 탄핵 기각 시 감액분 소급 지급 -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경우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도 보수감액 등 동일 적용	■ 법 시행 당시 탄핵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65조는 탄핵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¹⁾ 같은 조 제3항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의 행사가 정지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권한행사 정지 시 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바,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도 해당 공무원에 대해 보수가 전액 지급되고 있음.²⁾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이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1조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으로, 이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은 신분과 직위 보유 자체는 유지된 상태에서 해당 직위에서의 직무수행이 포괄적으로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정안들은 탄핵소추 의결 등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비록 그 신분과 직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직무를 수

1)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식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 연봉·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보수를 구성하는 항목은 제한없이 전액 지급되고 있으며, 직책수행경비와 같은 부대적 금전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으로 이해됨.

윤준병의원안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고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보수를 감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³⁾ 장철민의원안·박용갑의원안·김태년의원안·서영교의원안은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음.

김재원의원안·민형배의원안은 탄핵소추 의결시 보수를 전액 감액하되, 탄핵 기각결정 시 감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윤호중의원안은 탄핵소추 의결 시 보수의 50퍼센트를 감액 지급하되,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결정 시 감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탄핵 인용결정시에는 기지급하였던 보수를 다시 반환하도록 환수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 있음.

그리고, 김태년의원안은 탄핵소추 외에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까지 포괄하도록 제도를 일반화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안은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가 의결된 자에 한하여 보수를 감액하도록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민형배의원안

3) 안 제73조의5제1항에서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수 감액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곤란성·책임도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⁴⁾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하며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그 사유에 따라 봉급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⁵⁾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4)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5)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기간 동안 해당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들의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수용하여 탄핵소추 의결 등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수 감액의 사유 등 요건과 대상, 감액 비율 등 보수 지급 제한의 구체적 내용을 적정하게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탄핵소추 외에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까지 포괄하여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 김태년의원안의 경우 사유별로 일정 비율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직위해제 처분이나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질병휴직에 대해서까지

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지극히 나쁜 자’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는 ‘과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제4호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제한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강화하는 입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서영교의원안은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가 의결된 자에 한하도록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를 중대한 사유로 보고 해당 범죄가 탄핵소추의 이유로 적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 감액의 대상으로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권한행사의 정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보수를 감액하려는 본질적인 사유라고 볼 때, 특정한 범죄를 사유로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만을 보수의 감액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장철민의원안·박용갑의원안·김태년의원안·서영교의원안은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시에 근거한 계약법상의 원칙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공무원의 보수는 그 성격이 완전히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⁶⁾ 정직 처분에 따른 보수의 전액 감액은 임용권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벌적 처분으로서 징계의 확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불이익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⁷⁾

6)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공무원 제도의 유지를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7) 윤호중의원안·김재원의원안·민형배의원안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인용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결과적으로 권한행사 정지 기간에 대한 보수 전액을 감액하게 된다는

윤호중의원안·김재원의원안·민형배의원안에서 도입하고 있는 감액분 소급 지급을 통한 보전은 징계 처분, 면직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징계의결 요구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 제외)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해당 처분으로 인해 감액 지급되었던 보수를 소급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⁸⁾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탄핵소추 의결이 이유없는 것으로 배척되는 경우 해당 탄핵소추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은 불이익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윤호중의원안과 같이 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진 경우 기지급분의 소급적 반환을 통한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탄핵소추 의결의 취지가 탄핵심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권한행사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기지급하였던 보수를 부당한 금전적 이익으로 보아 소급적으로 환수)을 부과하는 타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권한행사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무엇인지⁹⁾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점에서 동일한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8)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 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 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5조제7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에 따른다.

9) 탄핵심판에서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지급받은 보수(50퍼센트)를 전액 다시

아울러,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권한행사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탄핵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감액분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도 동일하게 적용) 민형배의원안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수행까지 당연히 정지된다고 볼 수 있는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의 법적 효과를 개개 공무원의 책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처분 없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에까지 확장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봄.

한편, 개정안들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법체계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입법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인사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가공무원법」은 보수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법관 및 검사의 경우 각각 「법원조직법」·「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및 「검찰청법」·「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는 바,¹⁰⁾¹¹⁾ 보수의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보수 지급은 해당 공무원 보수의 생활급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10)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감액에 관한 근거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 두는 경우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개별 법률에서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관 및 검사에 대하여 보수의 감액 지급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해석상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또한, 탄핵소추 대상 중 법관의 경우 헌법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¹²⁾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법관의 보수를 감액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해당 헌법 규정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탄핵제도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기관간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검찰청법」

제36조(정원·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의 권력통제 수단으로서,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은 헌법기관 간 권력통제 차원에서 국회가 다른 헌법기관에 대해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바,

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임용권 행사의 내용, 범위, 방법, 절차 등 인적 자원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¹³⁾에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감액 등 탄핵소추의 효과에 관한 실체적 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의 목적이나 체계적 지위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법 방식인지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¹⁴⁾

이렇게 볼 때, 개정안들을 입법화함에 있어서는 탄핵소추의 법적 효과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그 지위와 적용 대상 등 규범력을 명확하게 하여 독자적인 법체계 하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봄.

인사혁신처는 탄핵소추에 따른 보수 감액은 관련 제반 사정을 중

13)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 탄핵소추 의결의 효과와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는 입법례로, 「국회법」 제134조제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심판절차를 통해 대상자의 귀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를 감액하는 것은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징계와 유사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탄핵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제도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와 법적 성격을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계약법상의 원리인 반면,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별한 근무 관계로서 인사정책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등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국가공무원법」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별 규정의 성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정무직공무원 등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로 정무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중 제한된 범위의 공무원에 적용되는 탄핵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점, 개별 법률에서 보수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관 등 특정직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의 보수 감액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탄핵의 대상 및 효과는 헌법에서, 탄핵소추의 절차 및 효과 등은 「국회법」에서, 탄핵심판의 절차 및 효과는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 탄핵 관련 법제를 고려할 때, 탄핵소추에 따른 보수 감액의 법적 근거

를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각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라는 요건은 그 의미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해당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인지 혐의사실도 포함하는지 여부) 탄핵소추의 원인된 사실은 보수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경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보수까지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	윤준병의원안	윤호중의원안	박용갑의원안
제3조(적용 범위)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조(적용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78조의5는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u>	제3조(적용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	-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 ----- ----- ----- ----- ----. 단, 탄핵소추 의결로 인하여 직위가 정

현 행	윤준병의원안	윤호중의원안	박용갑의원안
<신 설>	제73조의5(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대우) ①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고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제57조의2(탄핵소추된 공무원과의 직무상 접촉 제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보고나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된 정무직공무원(대통령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가기밀 및 직무 관련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그 밖의 정보 활용을 할 수 없다. -
<신 설>	-	제78조의5(퇴직을 희망하는 정무직공무원의 퇴	-

현 행	윤준병의원안	윤호중의원안	박용갑의원안
		<u>직 제한) 퇴직</u> <u>을 희망하는 정</u> <u>무직 공무원이</u> <u>「대한민국헌</u> <u>법」 제65조 및</u> <u>「국회법」 제1</u> <u>30조에 따라 탄</u> <u>핵소추가 발의</u> <u>되어 그 소추</u> <u>대상자에 해당</u> <u>하는 경우 임용</u> <u>권자는 퇴직을</u> <u>허용하여서는</u> <u>아니 된다.</u>	

나. 검토의견

각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 외에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의 신분상 처우에 관한 사항,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지 의무 등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의 신분상 처우에 관한 사항으로, 윤준병의원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사유(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 인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고(안 제73조의5제2항 신설), 윤호중의원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 탄핵소추가 발의된 경우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안 제78조의5 신설).

한편,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지 의무 등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윤호중의원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보고나 접촉을 금지하고 있으며(안 제57조의2 신설), 박용갑의원안은 탄핵소추 의결로 인하여 직무가 정지된 정무직공무

원(대통령 포함)에 대해 국가기밀 및 직무 관련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그 밖의 정보 활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안 제60조 단서 신설).

이는 보수의 감액 외에도 탄핵의 취지에 부합하는 규제적 장치를 법률로 구체화하여 규범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탄핵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으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을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윤준병의원안은 두 제도의 유사한 법적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탄핵소추는 직위해제 처분과 구별되는 헌법상의 고유한 제도로 공무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직위해제 처분과 달리 그 직위를 유지한 채 권한의 행사만을 정지시킨다는 것이 헌법 규정에 따라 부여된 탄핵소추의 고유한 법적 효과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탄핵소추 의결 시 공무원의 직위가 박탈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헌법 규정과 상충될 소지가 있고,

탄핵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 등 정무직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여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무원 신분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봄.

퇴직을 희망하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 탄핵소추가 발의된 경우 임용권자로 하여금 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윤호중의 원안은 탄핵소추 발의 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 공직에서 사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탄핵소추 여부에 관한 국회의 판단과 나아가 (의결 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도록 강제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탄핵소추의 발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안건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국회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제안의 단계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인 공무원의 면직을 제한하는 구속력있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신분상의 제약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소추의결서의 송달 및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 제134조제2항 후단은¹⁵⁾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 면직이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는 바, 법률 규정 간 상충의 소지가 있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봄.

15)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한편, 탄핵소추 의결을 받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보고나 접촉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윤호중의원안과 탄핵소추 의결을 받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밀 및 직무 관련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그 밖의 정보 활용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박용갑의원안은 권한행사의 정지라는 탄핵소추 의결의 규범적 효력을 실효성 있게 담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포괄적으로 정지되는 것으로 볼 때, 일부 특정한 행위에 한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법 적용상 논란을 야기할 소지는 없는지, 금지되는 행위가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직무 복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정지됨에 따라 금지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개별 행위를 법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범주와 유형에 대해 일괄적으로 검토하여 일관된 기준과 체계를 갖춘 법규범을 형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¹⁶⁾

1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핵제도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기관간의 권력통제 수단으로서,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 등 처우와 보고 금지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은 헌법기관 간 권력통제 차원에서 국회가 다른 헌법기관에 대해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볼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형식이나 내용을 불문하고 탄핵소추된 공무원에 대한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보고나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관 사무에 대한 정보와 소통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직무 복귀 이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소지는 없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직위해제 처분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일시적 보직 해임으로 탄핵소추와 그 실질을 달리하는 인사관리 수단으로서, 헌법상 제도인 탄핵소추 의결을 직위해제 처분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탄핵소추의 발의는 국회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건을 제안하는 것으로 국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해 당사자의 면직 제한이라는 실체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현행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탄핵소추된 자는 이미 그 권한행사가 포괄적으로

수 있는 바,

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임용권 행사의 내용, 범위, 방법, 절차 등 인적 자원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탄핵소추의 효과에 관한 실체적 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의 목적이나 체계적 지위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법 방식인지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렇게 볼 때, 해당 사항을 입법화함에 있어서는 탄핵소추의 법적 효과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그 지위와 적용 대상 등 규범력을 명확하게 하여 독자적인 법체계 하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봄.

제한되고 있는 바, 개별적인 제한을 별도로 두는 것은 그 밖에 다른 권한은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되는 등 적용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